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나 인 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사무관)

1. 동물복지 의의

'동물복지' 논의는 1964년 Ruth Harrison의 「Animal Machines」이라는 책을 통해 동물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 두려움, 좌절 및 기쁨 등을 느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5년 Harrison의 주장에 따라 영국정부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시발점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이 유럽전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동물복지란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①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⑤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구성되는 동물의 5대 자유(영국, FAWC)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ijnal1105@korea.kr 044-201-2355).

표 1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 자유

항목	주요내용
1.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충분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선한 물과 먹이에 쉽게 접근하고 충분한 영양을 유지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피난처와 안락한 휴식장소를 포함한 적절한 환경유지
3.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질병 예방 및 신속한 진단과 치료
4.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충분한 공간, 적절한 사설, 그리고 동료들과 어울림 유지
5.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환경 유지

자료: FAWC(The Farm Animal Welfare Council), 1993.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경제성·효율성 위주로 축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폐쇄형 케이지를 사용한 산란계 사육, 모돈 스톨 사육 등 집약적 축산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항생제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육-운송-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축산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에서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 세계 동물복지 동향

2.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복지의 개념의 전 세계적인 기준은 OIE에서 정립되었다.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기관으로서, 가축 방역에 대한 시험 연구 증진과 조정, 가축 전염병의 전파 경위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교환, 가축 위생 업무에 대한 국제규약 제정 및 조정, 각국의 동물 위생 상황에 대한 투명성 강화 외에 과학적 접근에 의한 동물복지의 증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OIE는 동물복지를 제3차 5개년(01~05) 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였으며, 제5차 5개년(11~15) 계획에도 ‘동물복지와 가축생산시스템’을 포함하였다. 200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을 제정하여 현재 총 12개 분야(육상동물 9분야, 수생동물 3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 회원국의 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OIE 아태 지역사무소는 지역 내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지역 동물복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계획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 유럽

1960년대 중반에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서 동물복지의 정책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1968년 동물복지에 대한 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EU는 수송중의 동물보호 규정을 골자로 하는 EU지침 77/489/EC(현, 91/628/EC 및 95/29/EC)를 입법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첫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6년에 산란계(laying hens)의 과도한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EU지침 86/113/EC(현재 88/166/EEC으로 대체)가 제정된 후 1991년에 EU지침 91/629/EEC에 의하여 송아지(calves) 사육기준이, EU지침 91/630/EEC에 의하여 돼지 사육기준이 규정되었다.

1997년 EU 이사회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5가지 사항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② 불편(discomfort)으로부터의 자유, ③ 고통,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⑤ 공포와 고민으로부터의 자유)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EU 지침 98/58/EEC가 제정되어 모든 종류의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규정이 마련되었다.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EU는 동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를 합의하였다. 동 의정서에서 EU 각 기관 및 회원국은 EU의 농업, 운송, 역내시장 등 EU의 정책, 법령 등을 수립·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관련 모든 EU정책에 있어 동물복지가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EU의회(2001)는 2012년부터 산란계 케이지 사육, 2013년부터 모든 스톨사육 및 송아지 나무틀(wooden crate) 사육을 금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성장촉진제,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항콕시듐제의 경우 일부 유예기간 설정) 등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동물복지 논의를 선도하는 EU는 국제 축산물 무역이 동물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WTO 농업협상에서 비교역적 관심 사항(NTC, Non-trade Concerns)의 한 부분으로 이론화하고 있으며, 2000년 6월에는 ‘동물복지와 농업무역(animal welfare and trade in agriculture)’이란 제하의 별도 협상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움직임은 한·EU FTA에도 영향을 미쳐, 동물복지 정보, 경험 및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2.3. 미국

미국은 1966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농장동물 복지 관련 내용보다 반려동물과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1873년에 동물운송 시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하고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28시간 이상을 운송수단이나 선박에 가둬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1958년에는 인도적 도축법(Humane Slaughter Act)이 제정되는 등 개별법에서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도적 도축법에서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고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개선된 작업환경의 제공 및 제품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인 방법이란 ‘소, 송아지, 말, 노새, 양, 도재 기타 가축을 도축함에 있어서 이들을 쇠사슬로 속박하거나, 들어서 올리거나, 내던지거나 하지 않고, 절단하기 전에 일격에 또는 총살로 또는 전기적, 화학적 또는 기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 가금류는 제외되어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주 단위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연방차원의 법을 따르는 형태이나, 일부 주에서는 농장동물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오리건 등에서는 모든 스톨사육, 송아지 사육틀 사용, 산란계 케이지 사육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농장동물 복지 실행의 특징은, EU와는 대조적으로 법률적 규제보다는 관련 업계에 의한 자체적인 소비자 대응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법률을 통한 통제보다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압력에 따라 대기업 슈퍼마켓 또는 레스토랑 체인 등이 독자적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제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납품받는 축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체에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생산자단체와 업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 임신한 돼지의 스톨 사육 등의 금지보다는 적정한 면적의 제공이나 강제환우¹⁾·부리자르기 제한 등이 중심이다.

1) 산란중인 닭을 인공적으로 탈갈이시켜 휴산하게 하고, 탈갈이 후의 산란율 수정률 및 부화율을 향상시키는 일

2.4. 일본

일본은 1973년에 동물보호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1999년 동물학대 방지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을 개정하여 실험동물과 산업동물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였다. 동 법률은 산업동물의 위생관리 및 안전, 동물의 입식 및 수송 시 배려, 산업동물에 의한 위해의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동물복지에 대응한 가축사양관리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일본 가축사육의 특징과 경제성을 고려한 축종별 동물복지 사양관리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는 계획을 실행 중에 있는데, 동 계획에 따라 돼지와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사육지침은 2009년, 육계와 젖소의 지침은 2010년, 육우에 대한 사육지침은 2011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보급 중에 있으며, 현재 말을 포함한 기타 가축에 대한 지침을 개발 중이다.

3. 국내 동물복지 축산정책 동향

3.1. 추진배경 및 경과

3.1.1.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화·계열화 등을 추구해 왔다. 덕분에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공장식 밀집사육이 일반화됨에 따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와 같은 악성전염병의 발생, 항생제 남용,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근주민과의 갈등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열악한 동물복지 수준이 국내·외에서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농장동물의 복지는 높아진 소비자들의 윤리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이로 인한 질병 발생과 축산물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축산업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동물복지는 EU,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EU FTA 협정문에 동물복지에 관하여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동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국내·외 요구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선제

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축산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던 시대는 가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3.1.2. 추진경과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두 번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으며, 농장동물의 경우 동물 운송 및 도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및 지원, 동물학대 금지 및 처벌 강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및 2010년 동물보호·복지 추진대책을 근거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및 축산물 인증표시를 추진하였다. 도입 용이성 및 동물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산란계에 대해 처음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었고, 2013년 9월에는 돼지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권고사항이던 동물운송 규정이 의무화되고,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2014.2월 시행).

3.2. 농장동물 복지 관련 연왕

3.2.1. 국내 동물보호·복지 법령 및 운영체계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령과 11개의 고시·훈령·예규를 운영 중이며,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 및 식용 목적을 제외한 파충류·양서류·어류이다.

- ①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③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④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용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⑦ 동물운송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⑧ 동물도축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⑨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 ⑪ 동물실험지침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3.

그림 1 농장동물 복지 관련 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 동물보호법령 운용 • 동물보호·복지 정책 총괄
검역본부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고시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점검 •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
축산과학원	-	• 동물복지 인증기준 마련 • 실증실험시험농장 운영
지자체	-	• 동물복지축산농장 사후점검 • 동물운송규정 위반 단속
축산농가 및 관련 영업자	-	•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생산유통 • 동물복지 사육·운송·도축 기준 준수
관련 단체	-	• 동물복지 축산 교육홍보 • 정책 건의자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3.

3.2.2. 국내 축산업 현황

우리나라 축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축산업 생산액이 16조 원(부가가치 4.9조 원)으로 총 농림업 생산액의 34.6%(부가가치 18.7%)를 차지하고 있다. 사육 마릿수는 2012년 기준으로 한육우는 3,059천두, 젖소 421천두, 돼지 9,916천두, 닭 147백만 수이다.

그간 전업화·규모화가 진전되고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사양관리로 생산성 측면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연간 모든 두당 출하두수(MSY)²⁾가 14.5두에 머무는 등 생산성은 낮고 환경·동물복지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시장은 단백질 공급 차원을 벗어나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고,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³⁾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소비량은 과거와 달리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다. 1인당 육류/우유 소비량(kg)은 2005년 32.1/62.9이었던 것이 2011년에 40.4/70.7, 2012에는 40.5/67.2로 나타났다.

3.3. 국내 동물복지 정책 동향

정부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업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및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 동물운송 규정 의무화, 농가·소비자 대상 교육·홍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3.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관리의무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식별가능성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은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만, 관행축산 농장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낮다. 한편,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질 좋고 윤리적인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하고 싶어도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정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선뜻 구매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축산농가는 확신을 가지고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추구할 수 있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소비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2012년 산란계에 처음 도입되었다. 농가 여건·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에 이어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 등 순차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확대할

2) Marketed-pigs per Sow per Year, MSY: 모든 한 마리당 1년간 생산된 돼지 중 출하체중(판매체중)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판매된 마릿수. 돼지 생산 농가의 생산효율 지표로 널리 사용됨(위키피디아).

3)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바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유기농·동물복지 식품, 에너지 절감식품, 공정무역, 로컬푸드 등)

계획이다.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의 주요 기준은 케이지 내 밀집사육 금지, 강제환우 및 부리다듬기 금지, 안락한 산란상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햇대, 모래목욕이 가능한 깔짚 제공 등이다. 2013년 말 기준 46개 산란계농장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약 1% 수준이다.

그림 2 관행 및 동물복지 축산 비교 - 산란계



〈관행축산-케이지 사육〉



〈동물복지 축산〉



〈 산란상 〉



〈햇대〉



〈모래목욕〉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에는 좁은 스톨 내 감금사육 금지, 최소한 운동이 가능한 분만틀 사용, 꼬리·송곳니 자르기 금지, 적절한 깔짚 제공 등이 요구된다. 현재 인증 신청 농장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없다.

그림 3 관행 및 동물복지 축산 비교 - 돼지



〈관행축산-스틀사육〉



〈동물복지 축산〉



〈관행 분만틀〉



〈운동이 가능한 복지분만틀〉

외국에서도 동물복지 인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각국 동물복지 인증제 비교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하고, 농장 및 축산물에 인증표시 • 인증축종 : 산란계, 돼지 (확대 추진 중)
영국  RSPCA MONITORED	• RSPCA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취급, 운송, 도축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식품에 「Freedom Food」 인증 리벨 부착 • 인증축종 : 육우, 우유,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칠면조, 연어 등 ※ RSPCA(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프랑스 	• 1960년부터 '전통방식으로 방목사육 및 생산'이라는 모토 아래 기금류(닭, 꿩), 칠면조(guinea fowl), 칠면조의 고기 및 계란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마크 부여
덴마크 	• 1992년부터 덴마크 동물보호협회(Dyrenes Beskyttelse)에서 각 축종별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한 생산자에게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부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3.

3.3.2. 동물복지 운송·도축

농장에서의 동물 사육뿐만 아니라 운송·도축 과정도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송·도축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사육-운송-도축에 이르는 동물복지형 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013년 3월, 2008년에 제정한 동물운송세부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동물도축세부규정 또한 새로 마련하였다. 동물운송세부규정은 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운송시 준수사항, 운송소요면적, 운송차량의 구조·설비, 상·하차 시설 등에 대해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물도축세부규정은 하차·계류시설, 동물 보정·기절·방혈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운송·도축 세부규정을 토대로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를 도입하였는데, 현재 2개소(부경/김해공판장)가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되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자란 동물이 지정된 동물복지 운송차량과 도축장을 거쳐야만 그 동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산란계에 대해서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송·도축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란에 동물복지 표시를 하였으나, 돼지 등으로 인증제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사육단계뿐만 아니라 운송·도축에 있어서도 동물복지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 8월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2014년 2월 시행)되어 권고사항이었던 동물복지 운송 규정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운송을 위하여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3.3.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축산농가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업 및 축산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요리 전문지·주요 무료일간지 등을 통해 동물복지 축산물의 우수성·안전성 및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해 알림으로써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 동물보호 교육에서도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 및 관련 영업자에게 구체적인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및 사양관리방법, 동물복지 인증의 인센티브 및 경제성, 향후 정책 방향 등을 교육하는 것은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전국 순회 교육, 우수사례집 제작·배부, 동물복지 운송·도축 지침 보급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맺음말

동물복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기준, 국민 일반의 높아진 윤리의식,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 등 우리나라 축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제 동물복지는 축산업계에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 동물운송규정의 의무화, 동물복지 교육·홍보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육계, 한·육우, 젖소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동물복지 축산농가의 초기소득 감소 정도 및 생산성 회복기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직불금 지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공급을 위해 친환경·동물복지 전용 유통망을 구축하고, 생산자·소비자 교류 확대 등 효과적인 다양한 교육·홍보방안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 축산물 품질 향상, 소비자 만족도·신뢰도 제고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유용. 2013. 「산란계·양돈 분야의 동물복지 축산 실태조사와 확산방안 마련 연구」.
11-1541000-001737-01. 농림축산식품부.

참고사이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